ESG위원회규정

2024년 6월 1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SGC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심의위원회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3.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 또는 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써 위원장을 선임한다. 다만, 초대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시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이사회의 각 이사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E(환경)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심의
   -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이행
   -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2. S(사회)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심의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방지교육 관련 사항
   - 협력사 등록 및 평가, 협력사 상생 관련 사항
   - 사회공헌 활동 심의
3. G(지배구조) 관련 정책활동 검토 및 심의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권리 강화 및 주주환원정책 심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안건
4. ESG 활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ESG 활동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제10조(선관의무 및 의견청취)

1.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부칙 (2021. 07. 0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6. 14)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